

축산업에 대한 免税事務運用指針

— 부대시설을 明示하여 免税가능 —

76년 2월 26일자로 內務部에서 畜産業에 대한 財産稅 및 取得稅 免税 사무운용지침中 일 부수정사항이 시달되었다. 이번의 수정사항중 특히 우리 양축가의 주목을 끄는 것은 「부대 시설은 목장, 사무실, 관리사, 사료 및 기자재창고, 사료저장용 퇴비사 및 싸일로, 건초사 착유실, 진료실과 기타 목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」라고 명시하므로서 지금 까지 면세조치를 받지 못했던 상기시설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. 시 달된 수정사항과 관계법규를 게재하니 양축가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. (편집자)

편 집 부

축산업에 대한 면세사무운용지침 수정 (세일 1234-2653(76. 2. 26))

1. 축산업의 개념

축산업이라함은 소, 말, 양, 돼지, 토끼, 친칠라, 사슴, 밍크, 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, 증식, 채란, 채모, 착유 등을 전문으로하는 사업을 말한다.

2. 목장의 개념

3.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이용상한선

목장이라 함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일단의 장소(축사 및 부대시설, 초지법에서 말하는 초지와 사료포)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한우 사육목장
- 나. 유우 및 비육우 사육목장
- 다. 종마목장
- 라. 양돈장
- 마. 사슴목장
- 바. 양계장
- 사. 토끼 및 밍크 사육장

구 분	사 업 별	가 축 두 수	축사 및 부대시설(평)			초지및사료포(ha)	
			축 사	부대시설	시설부지	초 지	사료포
한 우 (육 우)	사 육 사 업	1두당	1.5평	0.5평	10평	0.5ha	0.25ha
"	비 육 사 업	"	"	"	"	0.2	0.1
유 우	목 장 사 업	"	2.5	0.5	10	0.5	0.25
양	"	10	2.5	1	25	0.5	0.25
돼 지	양 돈 사 업	5	10	4	25	—	—
가 금	양 계 사 업	100수당	10	5	20	—	—
사 슴	목 장 사 업	10두당	20	5	50	0.5	0.25
토 끼	사 육 사 업	100수당	10	2	100	0.2	0.1
밍 크	"	5수당	2	2	10	—	—

4. 기타 참고사항

가. 초지 또는 사료포는 양자중 택일 적용하여야 하며, 초지와 사료포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각각 50%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여 적용한다.

나. 부대시설은 목장사무실, 관리자, 사료 및 기자재창고, 사료저장용 퇴비사 및 싸이로, 건조사, 착유실, 진료실과 기타 목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● 關係法規

가. 租稅減免規制法

○ 재산세의 감면조항

第9條(재산세의 감면)

第4項: 畜產業者가 畜產業에 직접 사용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면제한다.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要件을 갖추어야 할 畜產業者가 그 要件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要件을 갖춘 畜產業者가 同要件을 갖춘 날로부터 5年內에 牧場用土地 및 建物の 全部 또는 一部를 그 目的事業以外的 事業에 轉用하거나 讓渡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免除된 財産稅를 즉시 追徵(不可抗力의인 事由로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한다.

○ 취득세감면조항

第10條(取得稅의 免除)

第9項: 畜產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로서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것. 다만 農水産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의 要件을 갖추어야 할 畜產業者가 그 要件

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基準의 要件을 갖춘 畜產業者가 牧場用土地 및 建物を 取得한 날로부터 5年內에 그 目的 事業 이외의 事業에 轉用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免除한 取得稅를 즉시 追徵(不可抗力의인 事由로 인하여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除外한다)한다.

나. 法人으로 牧場新設時

新規出資로 인하여 寡占株主가 된 경우에는 地方稅法 施行令 第78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取得稅를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있다.

施行令 第78條(寡占株主의 取得等)

第1項: 법 제105조 제6항에서 “株式 또는 持分の 取得”이라함은 株主 또는 社員으로 부터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하는 경우를 말한다.

法 第105條(納稅義務者等)

第6項: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하므로서 第22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寡占株主가 된 때에는 그 寡占株主는 當該法人의 不動産, 車輛, 重機 또는 立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의 납세 의무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(寡占株主란 다음과 같은 者를 말한다).

法 第22條(出資者의 第2次 納稅義務)

第2號: 株主 또는 社員 1人和 그의 大統領이 정하는 親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者들로서 그들의 所有株式金額 또는 出資額의 合計額이 當該法人의 發行株式 총액 또는 出資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者를 寡占株主라 한다.

■ 양계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■

달걀과 닭고기는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

포함된 인류 최고의 식품입니다.

—양계산물 소비 촉진회—